

소 장

원 고

1. 홍 길 순(920202-2222222)

2. 홍 길 동(930101-1111111)

원고 1, 2의 법정대리인 김 장 군

3. 김 장 군(580101-1111111)

원고들의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法務法人 高度

담당변호사 이 용 환, 박 정 근, 고 윤, 이 경 준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94-1 화평빌딩 7층

TEL : 02-3355-7000 FAX : 02-6280-7000

피 고

1. 김 철 수

2. 이 영 희

피고들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동 100 **병원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홍길동, 홍길순에게 각 금 170,319,797원, 원고 김장군에



LAW FIRM GODO

법무법인 고도

[137-883]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4-1번지 화평빌딩 7층
Tel : 02)3355-7000 / Fax : 02)6280-7000 / Email : godolaw@naver.com

계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이영희는 망 홍길동을 치료한 **병원을 운영하는 자, 피고 김철수는 망 홍길동을 치료한 **병원의 의사인 자이며, 망 홍길동은 피고 김철수의 의료과실로 2009. 10. 18. 사망한 자, 원고 홍길순, 김가인은 망 김유신(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자녀들인 자, 망 노지은은 홍길동의 처로 홍길동의 사망 이후인 2009. 12. 2. 사망한 자, 원고 김장군은 망인의 아버지입니다(갑 제1호증의1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1호증의 2, 3 각 기본증명서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건의 경위

(1) 2009. 1. 15.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합니다) 입원

망인은 5일전부터 혈액양상의 객담이 소량 있어 3일전 내과의원 방문하여 큰 병원 치료 권유받은 뒤 2009. 1. 1 14:01 객혈 후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망인은 고혈압으로 경구약을 복용 중이



LAW FIRM GODO

법무법인 고도

었으며 응급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90/60-70-20-36°C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갑 제2호증 의료기록 2면 응급센터 기록지, 5면 입원 기록지(내과), 37면 응급실간호진행기록지 각 기재 참조].

같은 날 14:30에 호흡곤란과 어지럼증까지 있다며 힘들어하자 시행한 **심장효소검사 상 CK-MB 1.32(정상 0.0-6.9), 트로포닌 I 0.01(정상 0.0-0.11), 마이오글로빈 24(정상 10-46)** 체크되었고(갑 제2호증 21면 2009. 1. 15. 14:36 면역혈청학적 결과보고서 참조), **심전도 촬영 결과 「1도 방실 차단, 속발성재분극을 동반한 좌심실 비대, 비정상 T 아마도 허혈성, 좌측 리드 전방 ST 상승 아마도 좌심실 비대로 인한 비정상 심전도」**로 나왔습니다(갑 제2호증 49면 심전도검사결과지).

같은 날 15:27에 **흉부CT 촬영 결과 「1.0×0.7cm 크기의 관내돌출병변, 아마도 기관지 선종 또는 기타 다른 양성종양, 좌심방 확대를 동반한 심장비대」**로 확인되었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상 Ph 7.477(정상 7.35-7.45), 산소분압 50.5(정상 75-100), 이산화탄소분압 26.3(정상 32-45), 산소포화도 88.9(정상 95-99)%**였고,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8.88(정상 3.3-10)**이었으며 16:20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병원 777호 일반병실로 입원하여 산소 2L/분을 공급받았습니다(갑 제2호증 23면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갑 제2호증 21면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결과지).

(2) 2009. 1. 16.

09:12 기침시에 연한 분홍색의 가래가 계속 나오고 휴식시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산소를 계속 흡입하였고, **기관지경 검사 상 「좌측 주 기관지 종양 → 선종, 암 의증 → 수술 권유, 활발한 출혈은 없음」** 결과가 나오자, 주치의인 피



LAW FIRM GODO

법무법인 고도

고 김철수 의사가 망인의 부인에게 각혈의 원인은 좌측 주 기관지의 종양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조직검사 결과 보고 치료를 결정할 예정이나 수술(개흉 또는 내시경)이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는 출혈이 없으나 다시 출혈이 생기면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일단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 병원에서 지혈제를 맞으면서 입원하자고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42면 간호기록지, 갑 제2호증 24면 내시경실 검사 결과지).

09:21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상 Ph 7.429(정상 7.35-7.45), 산소분압 69.9(정상 75-100), 이산화탄소분압 29.9(정상 32-45), 산소포화도 94.7%(정상 95-99)%이었는데, 10:00부터 산소포화도 86%(정상 95-99)로 떨어지고, 활력징후 100/60-76-32-36°C로 호흡수가 빨라져 산소를 5L/분으로 올렸고, 심전도 상 「동성빈맥(101회), 아마도 좌심방 비정상적임, 속발성재분극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경계성 ST상승, 비정상적 심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갑 제2호증 25면 진단검사 의학과 검사결과지, 갑 제2호증 50면 심전도검사결과지).

21:40에 망인이 “저녁 9시경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죽을 것 같다”며 호흡곤란과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좌측 흉통이 있고 “심장쪽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식은땀을 많이 흘렸는데 얼굴이 가장 심하였습니다. 활력징후는 130/80-98-26-36°C였으며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하자 심장박동수가 104회/분으로 확인되어 주치의인 피고 김철수에게 알리자 전화상으로 분무기 흡입치료를 한 차례 시행하도록 처방하였고 분무기 흡입치료 후 21:45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43면 간호기록지 기재 참조).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분당 5L의 산소를 마스크를 통해 계속 흡입하는 중에도 호흡곤란이 지속되었고 22:22에는 왼쪽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통증이 심함을 호소하여 심전도를 체크하였고(결과지 없음), 22:35에 소외 이태백 의사가 심

전도를 확인한 후 니트로글리세린(혈관확장제) 1정을 설하 투여한 후 심장효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갑 제2호증 44면) 심장효소검사 상 CK-MB 2.06(정상 0.0-6.9), 트로포닌 I 0.16(정상 0.0-0.11), 미오글로빈 44(정상 10-46)(갑 제2호증 27면 2009. 1. 16. 22:47 면역혈청학적 결과보고서 참조),

CPK 74(정상 50-200), **LDH 227(정상 106-211), SGOT 59(정상 7-38)**로 체크되어 급성심근경색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갑 제2호증 25면 2009. 1. 16. 22:47 임상화학검사 결과보고서 기재 참조).

그런데 위 결과와 망인의 상태를 보고받은 주치의 피고 김철수는 망인에 대해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치료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진통소염제인 **cafenac**을 근육주사 하라는 처방만 내렸습니다(갑 제2호증 44면 2009. 1. 16. 22:36 간호기록지 기재 참조).

(3) 2009. 1. 17.

니트로글리세린 복용 후 00:04에 좌측 흉통이 조금 호전되었고 05:49에 검사한 SGOT 59(정상 7-38),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10.31(정상 3.3-10)로 높았으나 망인이 밤에 푹 잤으며 어제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다고 하자, 주치의인 피고 김철수가 일반병실로 옮기자고 하여 13:20에 휠체어를 타고 일반병실로 이실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17면 경과기록지 김철수 내과의사(2009. 1. 17 11:52) 어제 저녁 좌측 흉통과 불안상태, 각혈 있었음. 심전도 : 변화 없음, 심근효소 : 정상, 일단 어제밤 중환자실에서 관찰함 → 현재는 전혀 이상 못 느껴 병동으로 입원].



(4) 2009. 1. 18.

12:40에 점심약을 먹은 뒤 바람 쐬러 가는 도중 갑자기 좌측 흉부에 타는 듯한 작열감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당시 얼굴은 창백하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하고 분무기 흡입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좌측 흉부에 타는 듯한 작열감이 지속되고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있으며 호흡은 점점 빨라졌습니다(갑 제2호증 39면 응급실간호진행기록지 기재 참조). 심전도 검사 상 심실빈맥이 확인되었으며 심전도 검사 도중에 갑자기 망인이 경련을 일으켰고 당시 심장박동은 198회/분 이었습니다.

(5) 전국대학교병원에서 사망

14:18에 전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14:50에 사망이 선언되고 16:00에 영안실로 이송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10).

나. 관련 의학 지식

(1) ST분절 상승 심근경색(갑 제3호증)

(가) 임상양상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환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은 흉통이다. 통증의 양상은 깊고 내장성으로 칼로 찌르는 듯하거나 데인 듯한 느낌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주로 무겁고, 조이는, 그리고 누르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ST분절 상승



LAW FIRM GODO

법무법인 고도

심근경색으로 인한 통증은 위쪽으로는 뒷머리 부위까지 방사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꼽 아래로까지 방사되지 않는다. **전신무력감, 발한, 구역, 구토, 불안,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느낌 등이 동반될 수도 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통증이 운동시에 시작되는 경우는 협심증과는 달리 운동을 중단하여도 호전되지 않는다.

... 중간 생략 ...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성별, 연령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 1. 1.
- 사고 당시의 나이 : 49세 *개월 남짓(2009. 1. 18.일 기준)
- 기대여명 : 26.86년
- 가동년한 : 만 60세가 되는 2020. *. *.까지
- 호프만수치 : 98.4729

(2) 계산

일실수입액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월 12분의 5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245,123,469원입니다.

■ 2009. 1. 18.부터 2020. 1. 7.까지 122개월



LAW FIRM GODO

법무법인 고도

$3,733,873\text{원} \times 100\% \times 2/3 \times 98.4729 = 245,123,469\text{원}$

합계 : 245,123,469원

나. 위자료

피고 김철수의 과실 있는 치료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들은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 중간 생략 ...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김철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홍길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홍길순, 홍길동에게 각 금 170,319,797원, 원고 김장군에게 금 5,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망 홍길동이 사망한 2009.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LAW FIRM GODO

법무법인 고도

[137-883]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4-1번지 화평빌딩 7층
Tel : 02)3355-7000 / Fax : 02)6280-7000 / Email : godolaw@naver.com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의 1 가족관계증명서(홍길동)
- 2 기본증명서(홍길동)
- 3 주민등록등본(김장군)
- 1. 갑 제2호증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1. 갑 제3호증 전국대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중간 생략 ...

2012. 01.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法務法人 高度

담당변호사 이 용 환

박 정 근

고 윤

이 경 준



LAW FIRM GODO

법무법인 고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LAW FIRM GODO

법무법인 고도

[137-883]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4-1번지 화평빌딩 7층
Tel : 02)3355-7000 / Fax : 02)6280-7000 / Email : godolaw@naver.com

소 장

원 고 홍길동 외 2

피 고 김철수 외 1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345,639,594원

첨용인지액 1,437,500원

송달료 226,5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LAW FIRM GODO

법무법인 고도

[137-883]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4-1번지 화평빌딩 7층
Tel : 02)3355-7000 / Fax : 02)6280-7000 / Email : godolaw@naver.com